

3.

변호인, 방청객 이야기

나의 첫 국민참여재판, 17시간의 기록

2016년 국민참여재판 수기공모전 우수상



저는 2015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36살의 늦은 나이에 변호사가 되었는데, 로스쿨을 다니면서부터 기존 재판시스템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인 조정과 국민참여재판 등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름방학에 ‘YMCA 조정 캠프’에 참가하여 직접 조정을 해보고, 그림자 배심원으로 2012년과 2013년에 국민참여재판에도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2015년 가을부터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국선전담변호사님의 추천으로 함께 국민참여재판 변호인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자배심원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방청석에서 지켜본 적은 있었어도 실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다고 생각하니 설

레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당시 특수강도죄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기에 부담이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국선전담변호사님께서도 제가 느끼는 부담을 아셨는지 재판결과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수사기록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고 조언해주시며 제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국선전담변호사님의 조언대로 수사 기록을 복사하여 검토해 보니,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이혼한 전 부인에게 수시로 찾아가 경제적 도움을 받다가, 전 부인이 더 도움을 주지 않겠다고 거부하자 칼로 위협하여 돈을 강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검찰이 제시한 증거로는 고소인 겸 피해자인 전 부인의 증언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은행에서 돈을 찾는 CCTV 화면 사진, 사건 당일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타고 다닌 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과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 내놓은 것은 사건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전화 통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칼을 이용한 위협에 대해서 따지면서 물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전화 통화 녹취록이었습니다.

검찰의 증거에 의문을 품다

처음 수사기록의 증거들을 봤을 때만 해도 저 역시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여러 차례 검토해 본 결과 이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은행의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는 장면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피고인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해 차를 주차시킨 곳을 조사해보니 경찰 지구대에서 매우 가까운 장소였고,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을 통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은행에서 돈을 인출한 이후 곧바로 피고인이 운영하려고 봐두었다는 PC방을 함께 방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범죄사실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제시한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녹음한 전화 통화 녹취록을 듣고는 의문을 품게 됐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칼을 들고 갑자기 나타나서 나한테 그러면 어떻게 해?’라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이 부정하지 않으면서 ‘미안해’라고 계속해서 사과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단 이 사건 이후 통화가 몇 개 더 있었던 녹취록에도 대부분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구박하면 피고인이 사과하는 대화만 있었습니다. 이혼 후 수차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었음에도 매번 실패한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반복되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구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특수강도의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대화라기보다는 부부싸움으로 들렸습니다.

기록을 검토한 후 교도소를 방문해 피고인에게 왜 이혼을 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냐고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와는 경제적 이유로 위장이혼을 했던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이혼한 이후에도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미술학원도 함께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미술학원의 수입을 모두 피해자가 관리했기 때문에 피고인은 필요할 때마다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요청에 응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가 칼 이야기를 했을 때 왜 부인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서 피고인은 “이혼 후 경제적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도움과 함께 매번 구박을 했는데 제가 반박하면 할수록 구박이 더 심해져서 언제부터인가는 아예 반박하기를 포기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식이며, 칼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서 딱히 부정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피고인이 수습 장의 진술서를 변호인에게 보내왔습니다. 그 진술서에는 피해자가 아들을 출산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인 아내를 포기

하고 아이라도 구해야 한다고 했지만, 피고인이 끝까지 아내를 포기할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려서 기적같이 피해자와 아들의 생명을 모두 구할 수 있었던 이야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잘못으로 하나뿐인 아들이 바르게 성장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반성, 그리고 피해자가 거짓말로 피고인을 고발하여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지만, 여전히 피해자를 사랑하고 있고,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의 진심을 알았기에 교도소에서 나가게 되면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홀로 열심히 살겠다는 다짐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록 검토와 피고인의 접견을 마친 저와 국선전담변호사님은 피고인의 특수강도죄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이 사건 당시의 행적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번 반복된 반면에 피고인은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의 계속된 경제적 도움 요청에 지친 피해자가 더는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기 위해 평소 전화 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박에 반박하지 않고 사과를 하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칼 이야기를 하고 이를 녹음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국선전담변호사님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는 우선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반복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압박 질문을 통하여 피해자 스스로가 허위 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음을 시인하게 유도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끝까지 시인을 하지 않는다면 차선책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결혼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이혼을 하고도 피해자를 위해 희생하였던 일들, 그리고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해 배심원단에게 이 사건이 특수강도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 사이에서의 단순한 다툼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강조하기로 하였습니다.

밤이 늦어도 끝까지 집중력을 보여준 배심원단에게 감동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선정절차로 시작되었고, 이번 재판에서 채택된 증인은 피해자 한 명뿐이었기 때문에 변호인단이 증인신문에서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기회는 사실상 피해자에 대한 신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단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사항을 100개 넘게 준비하였고, 그로 인해 재판이 늦은 시간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배심원단 선정 과정에서 변호인단은 저녁 시간에 용무가 있거나 오랜 시간 자리에 앉아 집중해서 변론을 듣기 곤란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심원단에서 제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처럼 선정 계획을 세웠지만 늦은 시간까지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된다는 것을 배심원후보자들이 알게 되면 배심원단에 선정되는 것을 꺼려서 배심원단 구성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의 걱정과는 달리 배심원단 구성이 빨리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배심원후보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이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점과 국민참여재판이 현재 사법 시스템을 보완하는 데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배심원후보자들은 국민참여재판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자신들처럼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습니다.

배심원후보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오전에 배심원단 구성이 마무리되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모두변론을 마치고 점심을 먹은 후 본격적인 국민참여재판의 변론에 들어갔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변호인단의 신문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원래 계획대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계속 반복된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고, 이에 피해자는 흥분한 나머지 ‘경찰관이 나의 진술을 잘못 기재한 것이다’라는 대답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위 대답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피해자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인단의 계속된 압박 질문에 당황한 피해자는 피고인을 가리키면서 “잘못한 사람은 저기 있는데, 왜 나한테 이리시는 건가요?”라면서 변호인단에 화를 내더니 결국에는 울먹이면서 피고인에게 “내가 위증해 줄까? 그러면 되겠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고 있던 아들이 “엄마, 그러지 말고 묻는 질문에 똑바로 대답해요”라고 말했고 이에 대해 재판장님께서 직접 아들에게 경고를 하자 이번에는 피고인이 울먹이면서 피해자에게 “여보 내가 미안해,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 다시는 여보 괴롭히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을게. 우리 이리저 말고 여기서 우리 인연을 끝내자”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인, 피해자, 그리고 아들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재판정은 잠시 소란스러웠고 배심원도 매우 당황해 하였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애증 관계가 드러났지만, 피해자는 끝까지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강도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측도 변호인단의 피해자에 대한 질문과 피해자의 답변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변호인단과 격렬한 공방을 이어갔고, 결국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만으로 오후 재판을 마쳐야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8시경부터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으로 재판이 속행되었습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결혼생활과 이혼하게 된 경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와 생활을 함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는 무능한 사람일지는 몰라도 피해자를 사랑하기에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강취할 사람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검찰 측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미 이혼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할 이유가 없다는 점,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차례 도와주면서 이번이 마

지막이라고 다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한 것을 보면 피고인이 인간적으로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점, 그리고 결정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통화에서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는 것을 시인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 늦게 끝날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신문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돌발 행동, 검찰의 계속된 이의 제기로 인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재판 진행이 늦어졌기 때문에 변호인단 입장에서 매우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변호인단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것인데, 배심원단이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호인단의 걱정은 괜한 것이었습니다. 배심원단은 저녁 식사 후에 이어진 피고인에 대한 신문에서도 처음 재판이 시작될 때와 마찬가지로 집중해서 경청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질문 사항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을 따지지 않는 국민참여재판이기에 가능했던 판결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끝내고 검찰과 변호인단 양측의 최후변론, 그리고 피고인의 최후변론까지 마무리하고 나니 어느덧 시간은 밤 12시가 되어갔습니다. 저와 국선전담변호사님은 재판을 마치고 법원 근처의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국선전담변호사님은 지금까지 많은 국민참여재판을 해왔지만, 이번 재판이 가장 늦은 시간까지 진행된 것이라면서 저에게 수고가 많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아쉬웠던 점을 곱씹어 보면서 재판결과에 대해서도 예측해 보았는데, 배심원단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변호인단의 변론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래도 변호를 했던 입장에서 재판결과가 궁금했고 끝까지 피고인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국선전담변호사님에게 재판결과가 나오면 바로 알려드리겠다고 먼저 가시게 한 후 배심원단의 평의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 무렵 판결이 나왔는데 변호인단의 예측과는 달리 배심원단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순간 피고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배심원단과 변호인인 저에게 감사의 인사를 수차례 하였고, 재판장은 재판을 마치시면서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주신 배심원단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오늘과 같은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말로 재판을 마무리했습니다. 배심원단분들도 퇴정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이제부터는 아내분 괴롭히지 말고 남은 인생 아내분과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라면서 피고인에게 당부와 격려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본 변호인도 재판장님, 검사님, 배심원단, 그리고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고 새벽 2시가 훌쩍 넘어 집으로 돌아오는데 운전을 하고 있음에도 평소와 달리 오히려 몸에서 좋은 기운이 샘솟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는 11시만 되면 푹아떨어지던 제가 그날은 이상하게도 늦은 시간에도 졸리거나 힘이 들지 않았습니다. 4개월가량이 지나 수기를 쓰고 있는 지금도 그날 새벽에 느꼈던 기운이 그대로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재판이 막 끝났을 때는 재판장이 한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잘하지 못했지만 수기를 쓰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 조금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증인신문 등을 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기에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결혼부터 이혼 이후의 일들까지 모두 살펴보면서 서로의 눈물을 통해 애증 관계를 밝혀

낼 수 있었던 것이고, 이러한 애증 관계를 바탕으로 이번 사건을 평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을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재판장님의 마지막 말씀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셨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이번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기존의 일반 재판으로 진행했다면, 당사자들의 애증 관계까지는 밝히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더욱이 국민참여재판과 같이 다양한 연령과 성별 및 경험을 가진 배심원단이 아니라 결혼 생활을 경험해 보지 못한 젊은 판사님 또는 남성이나 여성 판사님들로만 구성된 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판단하였다면 과연 이번 사건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효율성보다 그 의미를 되새길 필요 있어

현재 일부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국민참여재판 자체가 비용적인 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민참여재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일반 형사재판 시스템으로는 이번 사건처럼 정확한 실체관계를 파악하기 힘든 사건에 대해 내리는 변호인의 변호와 법원의 판결이 피고인을 포함한 국민의 법원과 변호인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신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만 국민참여재판이 지금보다 큰 국민의 사랑과 법조계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비효율에 대한 비판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는 사건을 정확히 선별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과정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야 할 사건이 정확히 선별된다면 앞으로의 국민참여재판은 이번에 제가 참여했던 재판처럼 새벽까지 계속되는 재판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 각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전담하는 재판부의 추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국민참여재판을 새벽까지 진행하면서 다음 날 생업에 종사해야 하시는 배심원뿐만 아니라 다음 날에도 평소와 같이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재판장을 포함한 판사님, 그리고 사무관님을 포함한 법원직원분들에게도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기회를 주신 국선전담변호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는 국선전담변호사가 아닌 저와 같은 청년 변호사들에게도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국민참여재판의 수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배심원, 너의 목소리가 들려

2016년 국민참여재판 수기공모전 우수상



고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저는 국민참여재판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어렵고 전문적이라고만 생각했던 재판에 국민이 직접 참여한다는 점이 신기하기도 했고, 외국 법정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어 시간의 소논문 주제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정하는 등 해당 제도를 공부해왔고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그 관심은 이어졌습니다.

대학에서 저는 평소 관심이 있었던 국민참여재판을 주제로 소논문 학술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시행 상황에 대한 분석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조사를 진행하던 중 국민참여재판 건수가 최근 몇 년간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 신청 건수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 608건, 2015년 505건으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추세에 대해 뉴스 기사 속 전문가들은 국민참여재판 건수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피고인들의 신청이 급감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일반재판보다 국민참여재판의 형량이 무겁게 선고될 수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피고인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실제 국민참여재판의 평균 무죄율은 7.8%로 전국 법원의 형사합의 사건 1심 무죄율인 4.1%보다 2배 가까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피고인들의 ‘막연한’ 두려움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답을 찾아보기 위해 직접 국민참여재판을 참관하며 국민참여재판의 진행 과정, 법정 분위기 등을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두려워하는 피고인이 있다, 왜?

저는 7월의 어느 하루 직접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했습니다. 배심원으로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제도의 취지와 과정을 미리 공부하기 위해 재판을 방청하러 가면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안내 동영상을 시청했습니다. 그중 평의가 시작되기 전, 배심원단이 미리 재판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부분이 인상 깊게 느껴졌습니다. 실제 재판부에서는 배심원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민의 양심에 의거하여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 지킬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재판의 중요성과 그 숙의의 무게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된 법정은 일반법정과 달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석이 놓여 있었고, 맞은편에 스크린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법정에는 검사 2명, 국선변호인 1명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의 방청객은 10여 명 정도였고, 그 분위기가 매우 엄숙하여 실제로 법정 드라마 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검사님들은 증거 자료들을 열심히 검토하며 배심원에게 사건을 잘 설명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계셨습니다. 한편 재판 시작 전부터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은 휴지를 꺼내주시고, 종이컵에 물을 직접 따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법정에서 떨고 있는 피고인을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변호인의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배심원은 9명으로 남녀의 비율은 거의 반반이었지만 나이는 대부분 40-50대로 제 또래의 젊은 층은 없었습니다. 이를 보며 ‘배심원의 나이대가 다양하다면, 평의 시간에 더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 조금 아쉬웠습니다.

재판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재판장의 세심한 배려가 인상적

제가 참관한 재판은 이웃 간의 폭행 및 살인미수에 관한 사건이었습니다. 정확히 11시가 되자, 재판장님의 사건 호명과 소송관계인의 출석 확인,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서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재판장님은 국민참여재판의 의의와 절차 및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 등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일반재판과 달리 재판장님은 이 과정에서 ‘공판중심주의’ 등 어려운 법률 용어가 등장할 때마다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으며, 배심원이 모두 이해했는지도 꼼꼼히 확인하셨습니다.

양측의 모두진술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님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사용하여 피고인의 기소 요지에 대해 진술해 주셨습니다. 잘 정리된 화면을 통해 쉽게 설명해 주셔서 사건의 개요와 쟁점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로, 폭행의 여부와 살인의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검사님의 모두진술 후 재판장님은 배심원에게 폭행의 여부에 대해서는 증인이 진술하는 증거가 믿을 수 있는지를, 살인의 고의 여부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 및 위험을 인식하였는지를 바탕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또한, 배심원이 피고인의 유·무죄 및 양형에 관한 판단뿐 아니라 치료감호와 전자장치 부착 여부까지 판단해야 하므로 공판절차 모두에 집중해 달라는 당부도 하셨습니다. 재판장님의 말씀은 어려운 용어와 긴 시간 속에서 자칫하면 놓칠 수도 있는 재판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좋은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검사님이 제시한 쟁점을 반박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을 변호하셨습니다. 변호인은 검사 측과 다른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진술해 주셨는데, 이는 배심원 및 방청객들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보다 객관적인 자세로 재판에 임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에 대해 설명하면서 살인미수와 특수상해는 차이가 있음을 언급하며 쉬운 예시를 들어 주셨습니다. 가령, 칼을 휘두른 행위가 의심의 여지없이 외관상 사람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면 살인미수에 해당하지만, 단순히 위협이나 폭행 정도의 의도로 상해를 입힌 것이라면 특수상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살인의 고의의 기준 또한 범행 경위나 동기, 흉기의 위험성, 공격의 반복성, 사망 가능성 등 대법원 판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살인미수인지에 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모두진술을 들으니 재판이 단순히 개인적인 가치 및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기준으로 진행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일반법정에서와 달리 검사님과 변호인 모두 제자리에 서서 진술하지 않고 가운데로 나와 재판부뿐 아니라 배심원을 바라보며 말씀하시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이 ‘국민이 직접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임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검사님과 변호인이 사건의 쟁점을 일목요연하게 잘 보여주신 덕인지 보통 오후 공판에 진행되는 증거조사가 오전 공판에 일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검사님은 첫 번째 증인으로 폭행 사건의 피해자이자,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의 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때 증인과 피고인이 직접 마주치지 않도록 가림막이 설치되었습니다. 사건을 직접 조사한 검사님이 증인신문을 진행하셨는데, 증인의 표정과 목소리를 섬세히 살피며 진행하는 모습에서 배려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검사님은 증인이 사건을 떠올리며 힘들어할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주셨으며, 다시 신문을 진행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셨습니다. 검사님의 신문이 끝나자 변호인의 신문도 이어졌습니다.

변호인은 신문이 시작되기 전, 피해자가 빠르게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위로의 말씀을 건넸습니다. 검사 측과 다른 각도로 증인을 신문하시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같은 사건임에도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 유·무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판장님은 배심원이 증인에게 직접 신문할 수는 없지만, 메모지로 신문할 내용을 건의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면서 배심원이 적극적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셨습니다. 국민의 사법참여를 확대하여 재판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인다는 국민참여재판의 의의를 몸소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검사님은 폭행 사건의 목격자이자,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의 남편을 두 번째 증인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고령이어서 귀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은 증인을 위해 검사님은 포박포박 큰 목소리로 쉬운 표현을 사용하시며 증인이 답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검

사님은 증인에게 피해자의 현 상황과 치료비에 대해서도 질문하셨는데, 이를 통해 사건의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신문 후 재판장님과 배석판사님들도 검사님과 변호인이 신문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이를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증인신문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점은 신문 중 증인이 눈물을 흘리자, 재판장님이 증인에게 휴지를 건네주라고 지시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 법정 분위기는 매우 딱딱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국민참여재판에 직접 참여해보니 증인을 배려하는 판사님들과 검사님들, 변호인의 모습에서 따뜻한 인간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12시 20분쯤 재판장님이 재판은 점심 후 오후 2시에 속행된다고 안내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심원에게 식사는 법원직원들의 안내에 따르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식사 맛있게 하세요!”라는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저와 친구도 법원 근처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사건의 내용과 쟁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믿음이 커졌던 방청 시간

2시가 되자 재판이 속행됐습니다. 검사 측의 마지막 증인신문이 시작됐는데 마지막 증인은 당시 살인미수 사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담당 경찰이었습니다. 오전 공판의 증인과 달리 피고인에게 피해를 본 사람이 아니기에 가림막 없이 신문이 진행되었습니다. 증인은 오후 공판이 시작되기 전 미리 자리하고 있었으며, 검사와 변호인 측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검사님은 사건 발생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확인한 후 스팀 청소기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때 사용한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셨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범행 무기를 확인하는 절차였는데, 동일한 스팀 청소기 모델을 가지고 나온 것이 배심원의 판단에 한층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 후 피곤한 시간임에도 배심원은 적극적으로 메모지에 증인에게 질문할 거리를 적어 법원직원을 통해 재판장님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검사님과 변호인의

신문이 끝나자, 재판장님은 추가로 경찰이 출동한 당시 사건 현장의 피가 얼마나 굳어 있었는지, 피고인이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에 대해 질문하시면서 범행에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정보를 배심원에게 제공하셨습니다.

증인신문 후 증거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증거조사 또한 배심원이 잘 볼 수 있도록 슬라이드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검사님은 사건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임의동행 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 살인미수 신문조서, 검찰에서의 양형조사서, 증인신문 때 잠깐 제시되었던 스팀 청소기와 피해자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사진 및 의사 소견서, 피고인의 이전 전과 및 보호관찰 요청을 위한 청구 전 조사서를 차례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각했으며,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먼저 피고인의 이전 전과는 형량과 관련된 것이지 해당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배심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하셨습니다. 또한 살인미수 사건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미리 흉기를 준비해 간 것이 아니므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며, 스팀 청소기의 구조상 피해자의 머리가 가격된 것이지 피고인이 의도하여 머리를 때린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시면서 검사 측 살인의 고의에 대한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증거조사가 마무리되자 재판장님은 배심원이 증거로 제시된 스팀 청소기를 직접 들여보며 무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며, 배심원은 진지한 태도로 확인에 임했습니다.

이후 재판장님은 피고인을 증인석으로 불러 검사와 변호인이 신문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피고인은 약간의 정신질환이 있어서인지 검사님의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닌 엉뚱한 답변을 종종 하였으며, 재판장님과 배심원에게 선처를 바란다고 말하며 큰 소리로 울기도 하였습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검사님은 침착하게 질문을 이어가려고 노력하셨습니다. 피고인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린 후 질문하고 있는 사람에게 집중해 달라고 부탁하시며 피고인이 알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시는 검사님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답변이 담당 경찰이나 검찰에게 조사받았던 것과 달라지자 검사 측은 피고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 하였습니다. 방청 중 혼란스러워 고개를 가우뚱하고 있었는데, 재판장님이 진술의 신빙성 여부는 판사가 종합해서 판단한다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검사님이 살인미수 사건 현장 사진을 사용하여 신문하시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싶지 않다고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님은 피고인의 요청을 즉각 받아들여 해당 사진을 피해 질문하는 등 피고인을 배려해주셨습니다.

이후 변호인의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피고인이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마땅한 벌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확인을 받으셨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때 사용한 스팀 청소기가 놓여 있던 위치, 휘두른 방법 등에 대해 직접 스팀 청소기를 들어 보이며, 검사와 다른 각도에서 꼼꼼히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정신감정 자료를 토대로 피고인이 약간의 정신질환이 있다는 점, 가족과 연을 끊은 채로 가난한 생활을 해왔다는 점 등을 언급하시며 피고인에게 선처를 바란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검사와 변호인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와 실물 화상기를 사용할 때마다 배심원이 잘 볼 수 있도록 화면의 밝기와 확대 비율을 조정하고, 법정 조명을 조정하는 모습이든지, 배석판사님들 또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을 통해 증인에게 질문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일반 재판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모습이겠지만,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모두가 성실한 태도를 보여주었다는 점은 사법부에 대한 믿음을 한층 두텁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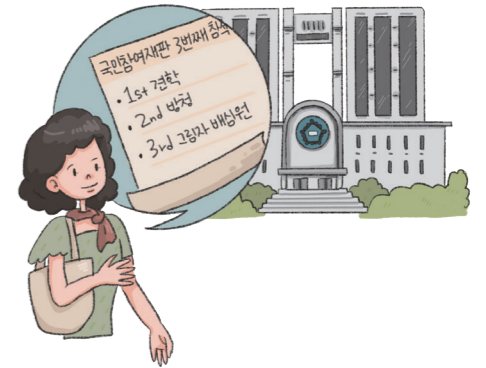
국민과 사법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정의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하면서 느낀 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장님이 최종 설명 시간에도 언급하셨듯이 정확한 판결에 이르기 위해서는 판사의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함께 배심원으로 참여한 일반 국민의 지혜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재판절차와 법 제도를 가깝게 접할 수 있어서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했던 배심원 2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의 78%(226명)가 지인에게도 국민참여재판을 권하겠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생활에서 사법 작용을 몸소 느끼며, 법에 대해 느꼈던 막연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 역시도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했던 경험을 주변 사람과 함께 나누고, 배심원과 방청객으로 참여할 것을 권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확한 판결을 위해 국민의 배심원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사법권의 영역에서 국민주권주의는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사법부와 국민이 함께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올바른 정의를 형성해 나갈 것을 기대해 봅니다.

이제 시작이지만 희망이 가득한 국민참여재판

2016년 국민참여재판 수기공모전 우수상



외롭고 높고 쓸쓸한 - 첫 법정 방청의 기억

난생처음 법정에 들어서 본 것은, 대학 학부 시절 아주 우연히 법원 견학을 할 기회가 생긴 덕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법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었고 법학 관련 수업을 들어본 적도 없는, 그야말로 ‘법 없이 살아왔던’ 문외한이었지만 범죄소설과 법정 드라마 마니아였던 저에게 형사 법정 방청 기회는 흥미진진하고 가슴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이의 있습니다!”로 대표되는 검사와 변호인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속사포처럼 날아드는 변호인의 질문에 하나하나 대답해가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답변이 자승자박 상태에 빠졌음을 깨닫고 당혹스러워하는 증인, 때로는 추상같이 호통을 치기도 하지만 또 한편

으로는 온화한 표정으로 피고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재판장,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으로 시작하는 한 편의 훌륭한 문학작품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화려한 최후변론, 그리고 끝내 정의가 승리하는 공명정대한 판결로 이어지는 그 드라마틱한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기대를 한껏 품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왠지 더 긴장된 마음으로 검색대를 통과한 뒤에 들어선 법정의 풍경은 그간 제가 상상해왔던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두침침한 조명, 어쩐지 나를 짓누르는 듯 무겁게 내려앉은 천장, 그에 비해 높고 멀리 떨어진 법대, 방청석의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두런거리는 방청객들… 이 모든 것들이, 그렇지 않아도 어두운 법정의 분위기를 한층 더 무겁고 위압적으로 만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모두 일어서주십시오.” 법원경위의 목청 높은 외침과 함께 공판은 시작되었습니다. 어렵풋한 기억을 돌이켜보면, 아마도 이전에 몇 차례의 공판기일이 진행되었던 듯했고, 대부분의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되어 공판 과정에서 이렇다 할 공방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실 어떤 절차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는지도 잘 파악할 수 없었고, 법정 내에서 오가는 진술의 내용도 방청석에 서는 잘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 법정 방청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다만 생각나는 것은, ‘외롭고 높고 쓸쓸한’ 법정의 풍경과 ‘우린 절대로 이런 곳에는 발도 들이지 말자’라고 종알거리며 함께 법정을 나서던 친구의 옆모습뿐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I - 국민참여재판 방청객의 이야기

그런데 사람 일은 참 알 수 없는 노릇이지요. 쓸쓸한 첫 법정 방청의 기억을 까맣게 잊어버린 저는 로스쿨에 진학하였고, 법학을 조금씩 배워나가는 과정에서 두 번째 법정 방청의 기회

를 얻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수업 첫 시간에 교수님께서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과정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해주시면서, ‘국민참여재판을 한번 방청해보면 형사재판절차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방청을 적극 권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법정 방청과는 전혀 다른 경험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친구들과 삼삼오오 모여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일행이 법정 안으로 들어섰을 때는 이미 배심원 선정절차가 끝나 있었고 본격적인 공판절차에 들어가려는 참이었습니다. 이번에 보게 된 법정의 풍경은 예전의 제 기억을 의심하게 할 정도로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어둡고 답답해 보였던 법정 안은 좀 더 환해졌고, 영상자료를 볼 수 있는 대형모니터를 비롯한 각종 기기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첫 법정 방청으로부터 꽤 시간이 흘렀으니 법원과 법정 역시도 많이 변화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방청하게 된 재판은 상습절도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바 있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지하철역 안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절도 범행을 저질러서 법정에 서게 된 노인이었습니다.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출소 후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피해 액수가 크지 않은 사실 등을 참작하여 선처를 구한다는 것이 피고인 측 국선변호인의 주된 변론요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검사와 변호인의 입증계획 설명은 대형 화면을 이용한 변론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이후 재판과정에서 어떠한 증거들이 제시되고, 어떠한 쟁점에 대하여 배심원이 판단하여야 하는지를 논리적이면서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매우 유용했습니다. 주요 쟁점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파

악할 수 없었던 첫 번째 법정 방청을 떠올려보면서, 이러한 변론 방식은 우리 헌법이 천명하는 공개재판주의에도 한층 더 부합하는 방식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어서 범행 장소인 지하철역 내의 CCTV 영상 재생을 통해 범행 당시의 상황을 확인해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을 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쟁점이 되는 부분 없이 범행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는 절차가 되었고, 뒤이은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 절차에서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역할도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CCTV 영상 재생, 증인신문,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등이 모두 마무리된 후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검사의 구형을 들으며 그 당시 저는 내심 꽤 놀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고, 그것도 이미 여러 차례의 범행으로 처벌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니 무겁게 처벌을 받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드는 한편, 출소 후 오갈 데 없이 곤궁한 상황에 내몰리다가 결국 남의 물건에 손을 댔다는 사정을 감안한다면 징역 3년은 좀 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 역시 지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재벌 총수들에 대하여 마치 공식처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는 것에 대한 비판여론도 높았을 때라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법 ‘감정’이라는 것이 그랬습니다.

검사의 구형이 있는 다음 변호인의 의견 진술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최종 의견 진술을 하였습니다. 약간 어눌한 말투로 말을 이어나가는 피고인의 진술을 들으면서, 변호인이 피고인의 최종진술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조언을 해야 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피고인의 최종진술은 재판부와 배심원에 대해서 자신의 사정을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므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사전에 잘 정리해서 진술해야 할 텐데, 피고인의 마음만 앞서서 그런 것인지 자신의 의사를 100%로 표현해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런 점에서 조언자로서의 변호인 역할에 다소 아쉬움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상의 절차가 모두 끝나고 배심원이 평의에 들어갔을 때, 저희 일행들도 법정 밖으로 나와서 각자의 의견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거의 전 과정을 보면서 각자 느낀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의문이 드는 점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눠보고, 배심원은 과연 어떤 평결을 내릴지 예측도 해보면서 판결선고를 기다렸습니다.

꽤 시간이 흐른 뒤에 재판부와 배심원이 법정으로 돌아왔고, 드디어 판결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벌써 오래전의 일이라 정확한 판결주문이 생각나지는 않지만, 검사의 구형보다는 많이 낮은 징역형이 선고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재판장님의 판결선고를 들으면서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가 처했던 상황에 대한 고려 등에 대한 배심원의 생각 역시 검사의 구형을 들으면서 내가 했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느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법 감정’이라는 표현에서의 ‘감정’이란 지극히 개인적인, 주관적인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평범한 사람의 눈높이에서 보는 보편적인 판단기준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의 법정 방청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저는 첫 번째 법정 방청의 그 쓸쓸했던 기억은 모두 지우고, 미래에 법조인(그 역할이 판사이든, 검사이든, 변호인이든)으로서 법정에 들어서게 될 제 모습을 그려보며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II - 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원의 이야기

유난히도 뜨거웠던 이번 여름, 저는 세 번째 법정 방청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것도 이번에는 일반 방청객이 아닌 그림자배심원 자격으로 말입니다. 로스쿨 2학년 여름방학 동안 법원에서 실무수습과정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그 안에 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원 참가 과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오토바이 운행 중 지정차로 위반으로 경찰에게 적발된 운전자가 단속을 불만을 품고 오토바이에 경찰관을 매단 채 끌고 가다가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했다는 사실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던 지난번 국민참여재판 사건과는 달리 이번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그림자배심원으로 참여하게 된 실무수습생들은 배심원 평의실과는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 모여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교육 동영상 시청 후 재판의 개정 전까지 배심원에게 배부되는 사건 설명 자료와 양형 토의 참고자료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료들에는 사건의 개요와 쟁점이 잘 요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절차 전반에 대한 안내, 법률용어, 각종 증거법칙, 증언의 신빙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등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서, 형사재판절차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제가 열심히 읽어본 항목은 양형 관련 사항이었습니다. 양형 토의 참고자료에는 이 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과 양형범위, 양형인자, 양형기준과 그 적용방법 등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되는 경우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만이 성립되는 경우로 나누고, 각각의 가중·감경범위와 특별·일반양형

인자의 예를 세세하게 분류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각각 유리·불리하게 참작된 양형요소들과 실제 선고형이 제시되었습니다. 형벌에 관하여 법률로 정해진 가중·감경사유가 있고, 양형위원회가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사실도 처음 알게 되었고,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위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이제 개정 시간이 되어 그림자배심원도 형사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방청석에는 이미 다수의 배심원후보자분들이 자리하고 계셨고, 곧 입장하신 재판장님의 개정선언과 함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번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할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배심원 선정절차부터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재판장님은 배심원후보자분들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고, 배심원의 역할과 선정절차, 자격요건과 결격사유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해주셨고, 그 내용은 법정 곳곳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곧이어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무작위 추첨 과정을 통해 선발하고, 검사와 변호인은 이분들에게 각각 몇 가지의 질문을 던진 뒤 그 답변을 토대로 기피신청 또는 무이유부 기피신청을 하면 그에 따른 불선정결정을 하고 새로운 배심원을 추첨하는 과정이 몇 차례 반복된 후에야 최종적으로 배심원 선정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검사와 변호인이 던지는 질문을 들으면서 그 의도를 헤아려보고, '이러저러하게 대답한 OO번 배심원은 기피신청 대상이 되겠구나'라고 짐작해보면서, '처음의 예상보다도 훨씬 더 치열하게 진행된 배심원 선정절차를 보니 오늘의 재판은 꽤나 뜨겁게 진행되겠구나'하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후 배심원 선서, 진술거부권 고지, 인정신문, 검사의 공소장 낭독, 피고인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변호인의 진술, 검사와 변호인의 입증계획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계속되었고, 뒤

이어 검사 측이 증거 신청한 CCTV 영상을 재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검사 측은 범행 당시에 현장 부근 고층빌딩 옥상에서 촬영된 CCTV 영상과 피고인이 연행되어 온 교통센터 내부 CCTV 영상을 증거로 신청하였는데, 후자의 경우는 검사 측이 신청을 철회했으나 오히려 피고인 측에서 증거로 신청하여 두 영상 모두 법정 내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옥상 CCTV 영상의 경우는 범행 당시 이미 날이 어두워져 있어서 사건 현장은 아주 작은 라이트 불빛으로만 보여 추가적인 설명 없이는 식별이 어려워 보였고, 교통센터 내부 CCTV 영상은 시간관계상 배속재생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해도 CCTV 영상이 증거로 제출된 이상 혐의의 입증은 크게 어렵지 않겠다고 짐작했는데, 실제로 확인해본 영상은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는 데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교통센터 내부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연행되어 온 이후의 상황인 상해를 입은 경찰관이 상처 부위를 카메라로 촬영하는 장면, 피고인이 진술서를 작성하는 장면, 피고인과 경찰관들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점 중 하나는, 배속재생되는 화면을 보면 상해를 입은 경찰관의 움직임 역시 원래보다 빠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은연중에 ‘이 사람이 입었다는 상처가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선입견을 갖게 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이 다른 형사재판에 비해 시간적인 제약이 더 많은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점을 보완할 방안이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로써 오전 재판 일정은 일단락이 되었고, 점심 후 다시 재판절차가 재개되었습니다.

오후에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서는 이 사건 피해 경찰관과 사건 당시 현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 경찰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증인들은 피고인 비대면 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은 피고인 재정 요청을 하여 재판부는 증인과 피고인 사이에 차단막을 설치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검사의 신문내용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달고 끌고 갔다는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고의를 입증하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고, 변호인의 신문내용은 당시 경찰관이 행한 지정차로 단속 방법이 적법했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에 중점을 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기억에 남았던 것은 두 분의 국선변호인 중 한 분은 다소 공세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증인의 답변에 대해서는 다른 분이 차분하게 논리적인 허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협력 작업을 선보였던 장면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이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임을 떠올려본다면, 변호인들도 공판절차에서 효과적인 변론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들을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실감하였습니다.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피고인신문까지 모두 마친 뒤 검사는 징역 3년을 구형하였고 변호인은 피해 경찰관 공무집행의 적법성 여부 등 지금까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쟁점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무죄 취지의 의견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최종의견진술을 끝으로 심리절차는 일단락되었고 배심원은 평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림자배심원 역시 별도의 공간에 모여서 이 사건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폭행의 고의는 인정할 수 있는지,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였고 볼 수 있는지, 유죄인지 무죄인지, 유죄라면 양형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등 많은 쟁점에 대해서 각자 나름의 생각도 정리해보고 다른 친구들의 의견도 들어보는 과정은 우리가 실제 배심원이 된 것처럼 진지하면서도 활기찬 토론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나긴 재판절차와 배심원의 평의과정을 거쳐 내려진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폭

행 사실 및 범의는 인정되나 경찰관의 직무집행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오래 보아야 예쁘다 – 국민참여재판 방청을 마치며

이 글을 쓰는 동안 제가 보았던 세 번의 법정 풍경을 수없이 많이 떠올려보았습니다. 그 세 번의 재판은 각각 사안도 달랐고, 쟁점도 달랐고, 결론도 달랐습니다. 또한 제가 알고 있는 법학 지식의 정도도 많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크게 달라진 것은 법원을, 법정을 바라보는 저의 시선인 듯합니다. 그전까지는 ‘법정’이라는 곳이 어쩐지 멀게만 느껴지고 나도 모르게 주눅 들어버리는 곳이라는 인상이었다면, 두 번의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한 후에는 훨씬 친화적이고, 개방적이고, 친절한 곳이라는 이미지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림자배심원으로 참가했던 두 번째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재판장님이 각 절차가 진행될 때마다 해당 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배심원이 유의해야 할 사항, 고려해야 할 점 등이 어떤 것인지 세세한 부분까지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신 덕분에 오히려 제가 형사재판절차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을 받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후 실무수습과정의 지도 판사님과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국민참여재판제도가 갖는 한계(시간적인 제약, 다룰 수 있는 사건 종류의 제한 등)가 있음은 부정할 수 없고, 법원으로서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데에 들이는 비용과 노력이 매우 큰 것은 부담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형사재판절차에 대한 교육과 홍보의 효과도 크고, 실제 배심원으로 참여했던 분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는 사법 신뢰를 더욱 단단하게 구축하는 좋은 제도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해서 종종 보도되는 내용 중 하나가 법원의 판결입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판결이거나 기존 판례의 입장을 변경하는 판결에 대한 내용이 주로 보도되지만 실상 더 많이 화제가 되는 기사는 이른바 말하는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판결”에 대한 비판 기사일 것입니다.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강력범죄에 대하여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다든가, 혹은 가볍게 처벌해도 될 법한 범죄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했다는 등의 보도를 접하게 되면 흔히들 ‘세상과 동떨어진 사법부’라고 혀를 끌끌 차면서 비판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의 결과에 대해 ‘법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여론에 휩쓸려서 내린 판결’이라며 국민참여재판제도 자체를 폄훼하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제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판결의 주체가 법관이든 배심원이든 상관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고 세밀한 기준을 근거로 하여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되고 그에 따라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국민참여재판 방청에서 저는 단순한 방청객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가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어려운 사정들을 고려해서 검사의 구형보다는 낮은 형이 선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지만 그 당시의 배심원은 상세하게 제시된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그 외에 고려해야 할 점들을 꼼꼼하게 따져본 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형량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제 개인의 생각과 배심원의 양형의견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국민참여재판 방청에서는 그림자배심원으로서 유·무죄 판단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유죄인 경우의 양형 관련 검토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고 들으면서 이 사건에서 어떠한 판결을 내려야 할지 고심한 끝에 저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을 뿐이지만, 그 당시의

배심원 역시 이러한 자료들과 공판에서의 심리내용을 바탕으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또한 결과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배심원의 판단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시다.

위의 두 사례는 어디까지나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단 두 번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참여재판은 평균적인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법 감정과 법의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임을 드러내는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응어리를 풀고 피해를 회복하여 원래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형사절차의 기본상식은 일반인의 법 감정이자 우리나라의 형사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대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은 이러한 대원칙의 구현을 일반 국민들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부터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은 ‘벌써 8년째’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고, ‘아직 8년밖에 되지 않은’ 제도이기도 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이제 겨우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쯤 될까요? 아직 8살밖에 안 된 어린이는 가정과 학교, 사회를 통해 많은 것들을 배워나가면서 점차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아직 덜 자랐다고 해도 한 명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는 국민참여재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좀 더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고쳐나가면서 점차 완벽한 제도로 발전시켜나가야 함과 동시에 우리 사법제도의 발전과 사법 신뢰 구축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형사재판절차의 일부분으로서 유지해야 하는 제도가 바로 국민참여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제가 직접 경험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느낌을 나태주 시인의 시구절로 같음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 나태주, 「꽃」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신뢰를 갖게 해준 배심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7년 국민참여재판 수기공모전 최우수상



사람은 갈등으로 다투게 될 때 혼자 힘으로 과오를 판단하기 어렵다 싶으면 “길을 막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자”고들 한다. 이 말은 지나가는 사람 누구라도 명명백백하게 객관적, 합리적으로 사건의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의의 평범함이나 사람의 상식을 기대하며 하는 말일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은 이렇게 길을 막고 가는 사람에 해당하는 불특정인으로서 사건의 정의를 판단할 사람으로 대치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형사재판의 피해자로서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할 수 있었다. 피고인 측에서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했는데 피해자인 나로서는 배심원의 편견과 지적 능력, 진지함이나 공정성에 회의가 들었다. 왜냐하면 나의 사건은 횡령, 사기 사건으로 피해액이 수십억 원을 상회하고 있어 ‘돈 많은 사람이 욕심을 부리다가 사기당한 것’이라는 선입견이나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차라리 경험 많은 판사라면 사회적 편견이나 선입견을 떠나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피고인 측에서도 굳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은 배심원의 이런 편견을 유리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생각은 아니었는지 의심이 들었다. 이런 사실이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선뜻 내키지 않았던 큰 이유였다.

과연 복잡한 사기사건 과정을 배심원이 이해할 수 있을까?

졸지에 남편을 잃은 나는 자녀만 남은 상태에서 상속세를 내기 위해 살던 집을 팔아 현금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 직장인으로서 오랜 기간 일 해왔기에 세상일에 아무 경험이 없었던 내가 현금을 가진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의 회사가 건축 자금 투자를 요청해 왔다. 상속세는 6년간 나누어 낼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가 있어 나는 건축에 투자하고 이익금을 받는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서 내용에는 건축을 위한 모든 대출에 내가 동의하여 건축에 지장이 없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리하여 건설회사는 내 이름으로 거액의 사채를 썼고 나는 계약서에 따라 이에 동의하는 인감을 주었는데 건설회사는 이내 부도로 도산했다.

건설회사 대표는 자신이 대표가 아니라며 정작 다른 사람이 횡령했다고 범인을 지목했으나 건설 임금을 받지 못한 노무자들의 고발로 구속이 된 상태에서 나의 사건은 진행되었다. 부도가 났을 당시 나는 변호인을 선임할 비용조차 없이 전액이 건설회사로 넘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무작정 관련 서류를 들고 찾아간 경찰서에서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다 졸도하고 말았다. 사채업자들이 집이며 모든 것을 압류하고 날마다 독촉이 왔는데 그 많은 돈을 가져간 건

설회사는 전혀 책임지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되었는데 피해액과 피해자인 나의 지적 능력이 오히려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 같아 조바심이 났다. 무식하고 뭘 몰라서 사기를 당한 게 아니고 이익을 좇다가 손해를 본 것이라는 생각이 배심원에게 적용될까 봐 불안했다. 게다가 이 사건은 지금까지의 설명만큼 간단하지 않아 많은 관련자가 있었고 빌린 과정, 용처, 용자 과정 등 문제가 복잡하고 건축용어, 은행에서 쓰는 경제용어, 법률용어가 어려워 배심원이 이 모든 과정과 내용을 제대로 숙지할 수 있을지 의심이 가기도 하였다.

내 재판은 8명의 배심원이 있었고 아침 9시에 시작했다. 난 국민참여재판은 한 번에 재판이 끝나고 그날로 구형과 선고가 이루어지는 줄 몰랐다. 안일하게 추후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재판 당일 아침에 판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알게 되어 적잖이 당황했다.

재판 진행 도중 아니나 다를까. 피고인 측에서 돈의 액수가 다르다는 주장을 해왔다. 물론 반증을 하지 못하면 꼼짝없이 내게 불리한 상황이었다. 이때 나는 즉석에서 인터넷 뱅킹을 열 수 있으며 이것을 증거로 받아 주기를 청했더니 이내 받아들여졌다. 나는 휴대전화로 인터넷 뱅킹을 로그인하여 이체 결과를 제시하였고 판사는 이를 꼼꼼히 배심원에게 설명하였다. 증거채택에 권위적이던 영화 속의 판사와는 달리 매우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판사의 수용적 태도에 감동했던 순간이다. 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 못 한 피해자의 불찰을 감안하고 합리적 결과를 위해 증거를 그 자리에서 허용해준 민주적 판사가 있다는 사실은 권위적이고 비리가 많다는 법조계의 불의한 사건들이 일부에 불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였다.

나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감동을 줬던 배심원의 진지한 태도

재판은 9시에 시작하여 두세 시간쯤로 휴식과 식사가 있었는데 재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배심원이 지치고 귀찮아하지는 않을지 조바심이 났다. 사건이 어렵고 복잡하며 길어지고 지루해지면 결국은 피해자에게 유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염려도 생겨났다. 재판을 지켜보는 당사자인 나는 배심원의 태도가 해이해지고 있지는 않은 지 수시로 그들의 동태를 살폈으나 이것도 기우였다. 흔히 설교를 듣거나 영화를 볼 때 조는 사람이 부지기수인 세상의 모습과 달리 그들은 흐트러짐 없이 집중하였고 메모하며 기록하였다. 검사의 구형이 난 것은 밤 11시 경이었는데 재판 시작 후 몇 번의 휴식과 식사를 거친, 실로 상당한 체력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심원의 자세는 시종일관 꼳꼳하고 진지했다. 게다가 배심원은 무작위로 뽑힌 사람인 만큼 성비나 나이도 제각각이었는데 사건 설명에 표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진지하게 몰두하는 모습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뢰를 갖게 했다. 밤 11시에야 비로소 시작된 배심원의 회의는 두 시간 반이 걸렸다. 이는 매우 심도 있는 회의를 했다는 추측을 하게 하며 배심원이 결론을 허투루 내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기에 매우 충분한 시간이었다. 이 늦은 시간에 남의 사건에 이토록 진지하게 성의를 가지고 갑론을박한다는 사실은 배심원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국민성과 국민의 자질에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하였다.

배심원은 검사가 지목한 제1사안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유죄를 제2사안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무죄를 결정했다. 그런데 판사는 제2안에 대하여 배심원의 평결은 이러하나 법원 측은 제2사안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하였다. 이것은 전문 판사가 판단한 사안으로 일반인이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수정한 것이어서 더더욱 신뢰가 간 사례이다. 제2사안의 유죄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때 그 이유가 너무도 타당하여 수긍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판사는 쉬운 용어로 차근차근 설명해 나갔다. 밤이 늦어 서둘러 끝내고자 하는 태도는 찾아볼 수 없

있고 개인의 억울함을 위해 이 많은 배심원과 판사가 밤새워가면서 집중하고 일한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감동을 주었다. 결국 국민참여재판은 비전문가들의 국민의 법 감정이나 법에 대한 정서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고 믿게 되었다.

구형 후 선고가 되기까지 배심원이 회의를 하던 법원의 온통 환한 불빛은 판·검사와 배심원의 땀과 노고가 담긴 또 다른 증거라 여겨졌다. 지친 기색 없이 새벽 두 시까지 판결과 그에 대해 설명을 해준 판사와 검사 그리고 배심원의 노고에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대가 없이 남의 손해에 귀 기울여 들어주고 의논해 준 배심원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에 또 한 번 큰 믿음이 갔다.

적어도 나의 인생에 권위적이고 오만한 판검사는 없다는 사실이 내가 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체험한 가장 큰 결과이다. 믿을만하다. 성의 있어서, 진지해서, 그리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희망을 보았던 경험이다. 판사와 배심원이 보여준 균형감과 공정함에 나의 기우는 사라지고 더 나아가 안심해도 되는 나라라는 생각까지 들게 한 하루였다.

국적과 편견을 넘은 국민참여재판

2017년 국민참여재판 수기공모전 우수상



날씨가 쌀쌀했다. 더위가 걷히고 한기가 느껴지는 가을이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한기를 참았다. 반팔을 입은 채 닭살이 돋은 팔을 손바닥으로 감쌌다. 체포될 때 복장 그대로였다. 피고인은 수의를 벗고 사복을 입었다. 배심원에게 ‘죄인’이라는 선입견을 주지 않아야 했기 때문이다. 검사조차 “보석으로 풀려났나요?”라고 물어보며 의아해 했다. 법정에서 구속 피고인이 사복을 입은 것은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이번 재판은 줄곧 선입견을 허무는 것이 과제였다. 피고인은 중국인 노동자였다. 보이스포싱에 연루된 중국인은 당연히 유죄일 거라는 예단을 극복해야 했다. 외국인 노동자를 팔시하는 편견도 이겨내야 했다. ‘무죄 추정’이

허울 좋은 선언이 아니라 실제로 구현될 수 있는 절차, 백지상태에서 피고인을 다시 보는 절차, 그것이 국민참여재판이었다.

‘안 되는 사건’을 만나다

변호인들끼리 흔히 ‘안 되는 사건’이 있다고 말하곤 한다.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으면 피고인의 범행 부인에도 불구하고 무죄는 어렵다. 피고인이 끝까지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꽤 씹죄’까지 추가될 수 있다. 피고인의 이익을 진정 생각하는 변호인이라면 재판에 어떻게 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할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

공소장을 받으면 사건이 시작된다. 변호인은 공소장과 증거를 보고 우선 ‘되는 사건’과 ‘안 되는 사건’의 감을 잡는다. 유·무죄의 선입견을 갖는다는 말은 아니다. 정확한 조력을 위해 가급적 사건을 냉정하게 따져본다는 뜻이다. 검토를 마치면 피고인을 만난다. 서류에 담기지 않은 실체적 진실은 없는지 피고인의 육성을 귀담아듣고 표정을 살핀다.

2016년 8월, 사건 하나가 왔다. 전형적으로 ‘안 되는 사건’이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를 받는 중국인이었다. 피해자는 70세 할머니였다. 피해자는 어느 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를 받았다. 통장에 있는 돈이 위험하니 출금하여 집 냉장고에 보관하라는 내용이었다. 피해자는 은행을 찾아가 현금 인출을 요청했다. 보이스피싱을 눈치챈 은행 직원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이 은행에 도착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지시에 따라, 마치 돈을 인출한 것처럼 집 냉장고에 돈을 보관했다고 직원에게 알렸다. 경찰관들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현장에서 검거하기 위해 피해자 집에 잠복했다.

피고인은 이날 친구를 따라 춘천에 왔다. 친구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서 ‘일거리’가 생

겼으니 춘천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춘천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친구가 피해자 집에 들어갈 때 피고인은 집 밖에서 기다렸다. 피고인은 친구가 범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잠복 경찰관에게 체포되고 말았다. 지역 신문에는 “침입 절도형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라는 제목으로 크게 보도되었다. 피고인의 친구는 자신이 인출책을 맡았다고 범행을 자백했다. 범죄수익금을 피고인과 나누려고 했다고도 진술했다. 피고인과 친구 모두 중국 출신이었다. 피고인은 끝까지 몰랐다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누가 봐도 ‘안 되는 사건’이었다.

무죄가 선고되기 매우 어려운 보이스피싱 사건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보이스피싱 피해가 2,922건, 피해액은 247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소탕되면 좋겠지만 현실은 다르다. 핵심 조직은 중국 현지에 있어 국내 수사망에 쉽게 걸리지 않는다. 검거되는 사람은 대부분 인출책이다.

범죄는 범죄를 인식하고 행동했을 때 처벌된다. 범죄 고의는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만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이상하다’라는 의심만 있었다면 대부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몰랐다’는 변명은 잘 통하지 않는다. 사회 정책적으로 엄벌 필요성이 강조되어 ‘엄격한 증명’이 완화되는 느낌을 받는다. 형벌도 무겁다. 전과가 없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징역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흔하다. 월척을 낚지 못하니 피라미를 잡아 몽둥이를 휘두르는 모양새다. 변호인에게 보이스피싱은 변론이 어려운 사건에 속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친구는 여행가이드 경력이 있었다. 그 때문에 피고인은 친구와 곳곳에 함께 다니길 좋아했다. 피고인은 일자리를 알아보러 춘천에 간다는 친구 말을 듣고 동행했다. 그런데 친구가 정작 찾아간 곳은 회사가 아닌 주택가 골목이었다. 현장에서 도망치는 피고인을 보고 경찰은 피고인을 공범으로 지목했다.

만약 이 사건이 기계적, 형식적으로 판단된다면 유죄의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유사한 사건들은 거의 유죄로 판단되는 추세였다. 이 사건에서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컸다. 피고인의 특수한 사정을 호소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은 범죄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다. 범죄와 관계없이 ‘따라’ 온 것에 불과했다. 기존 범조인의 시각이 아닌 국민들의 시각이 필요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은 이유다.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설득하다

중국인 범죄에 대한 우려가 크다. 잇따르는 강력사건으로 반중국 감정이 일어나기도 한다. 2012년 수원 살인사건 오원춘, 2016년 제주 성당 살인사건 범인도 중국인이었다. 보이 스피싱 범죄조직을 풍자한 개그 프로 코너에서도 등장인물은 재중 동포라는 설정이다. 이처럼 중국인을 범죄자로 쉽게 여기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었다.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때 중국인에 대한 선입견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문제였다.

교도소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우진(이하 가명) 씨는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대로 재판하면 유죄가 될 가능성이 커요. 상황이 좋지 않아요. 방법을 고민해 봤어요. 한국에는 국민들이 판사보다 먼저 판단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있어요. 국민들이 판단하면 판사도 그 판단에 따르는 게 보통이에요. 국민참여재판은 온종일 해요. 이우진 씨 말을 더 잘 들어줄 거예요. 변호인이 설명할 수 있는 시간도 길어요. 만약에 결과가 안 좋으면 항소심에 가서 판사한테 다시 재판받아 볼 기회가 있어요.”

설명을 듣던 피고인의 표정이 경직되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 싫어하잖아요.”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두려워했다. 아니 한국인들의 선입견을 무서워했다. 삶의 현장에서 한국인이 중국인을 무시한다는 사실을, 일반 국민들도 중국인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피고인은 체험으로 느끼고 있었다.

설득은 이어졌다.

“하나 약속할게요.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을 똑같이 봐 줄 사람을 골라줄게요. 재판에 들어오는 배심원은 10명이에요. 그런데 원래 10명은 아니고 50명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저는 재판이 시작하기 전에 먼저 법정에 가 있을 거예요. 이우진 씨한테 편견 없는 사람을 골라 놓을게요. 한국 사람이라고 중국 사람 다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하고 재판에서 내리는 판단은 달라요. 믿어 봐요.”

피고인은 말없이 설명을 들었다.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었다. 고민이 끝났는지 말을 이었다. “하겠어요. 시민 참여재판 하겠어요. 변호사님만 믿을게요.”라고 답했다.

피고인이 동의했으니 일단 다행이었다. 한편으로 어깨가 무거워졌다. 참여재판 준비는 만만치 않다. 일반 사건 10건 정도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재판에 앞서 공판준비절차, 배심원 선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판 후에는 배심원 평의도 이어진다. 재판이 12시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흔하다. 통상 하루로 끝나지만, 소말리아 해적 사건은 장장 5일에 걸쳐서 재판이 진행되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총 1,972건이 열렸다. 그 중 78.9%를 국선변호인이 맡았다. 재판에 들어가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 때문에 비용상 제약이 있는 사선변호인들은 국민참여재판을 선호하지 않는다.

외국인 노동자 이우진(가명) 씨

이우진 씨는 외국인 노동자였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한국인이었으나 어머니는 중국인으로 중국에 정착했다. 하얼빈에서 나고 자란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족들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다. 가족들 형편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은 2012년 친동생과 함께 한국을 찾았다. 취업비자를 받고 자동차 부품회사, 전자회사를 전전하고 막노동을 하며 생활비를 가족들에게 보냈다.

한국에 와서 제일 힘든 점은 한국인들의 멸시였다고 한다. “직장 많이 다녀봤는데 중국 사람을 깔보는 느낌이 들어요”라고 말하는 이우진 씨. 설 틈 없이 일을 시켜 피곤한 것은 참을 만했지만, 외국인 노동자를 인간 이하로 대하는 태도가 견디기 어려웠다고 한다. 이우진 씨는 회사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무조건 반말을 들었다. 근로시간이든 아니든 언제든지 씨먹을 수 있는 ‘부품’처럼 취급받았다. 지금은 한국말이 늘어 필요할 때는 항의도 할 줄 안다. 처음에는 한국말을 못 해 온갖 무시와 비하를 당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한국을 떠나지 못한 이유는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가족 때문이었다. 이우진 씨가 가장 걱정했던 건 유죄보다도 강제 출국이었다. 유죄를 받아 강제 출국당하면 피고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가 무너지는 상황이었다.

베일에 싸인 배심원 선정절차

반중국인 감정,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던 이유는 ‘배심원 선정절차’ 덕분이다. 이우진 씨는 훗날 털어냈다. “변호사님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자고 했을 때 걱정 많이 됐어요. 그래도 변호사님이 중국인 안 좋게 보는 사람은 빼주겠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결심했었어요.”

배심원 선정절차는 공개되지 않는다. 재판부, 검사, 변호인만 참석한다. 방청객이 들어올 수 없고 그림자배심원조차 선정절차를 경험하지 못한다. 인터넷을 검색해 봐도 배심원 선정절차와 관련된 내용은 원론적인 절차 안내가 대부분이다. 선정절차의 모습은 베일에 싸여있다.

배심원후보자 50여 명 중 소수의 배심원을 골라내는 선정절차는 본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 진행된다. 선정절차의 평균 소요 시간은 1시간 15분 정도이다. 최장 기록은 4시간 30분이라고 한다. 물 위에 떠 있는 거위의 발이 바쁘게 움직이듯, 재판 시작 전 선정절차에서 변호인과 검사는 바쁘게 움직인다.

배심원 선정절차는 질문을 통해 선입견을 품은 배심원후보자를 걸러내는 기능을 한다. 변호인에게 본 재판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피고인을 위한 변론은 이때 이미 시작되는 것이다. 질문을 던지지만, 실제로는 변론의 밑밥을 깔아놓는다. 누구나 ‘그렇다’라고 답변할 만한 대명제를 활용한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하면 누구나 맞다고 답한다. “‘누구에게나’에는 외국인도 포함된다고 생각하니까?”라고 물어도 긍정적인 답이 나온다. 재판을 받는 피고인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는다. “이 피고인이 중국인이므로 엄하게 처벌하겠습니까?”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안 된다. 사람은 공격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에 움츠러드는 경향이 있다. 단계별로 범위를 좁혀 묻는다. 결정적인 질문은 최후 변론 뒤편으로 남겨둔다.

선정절차에서 깔아놓은 밑밥은 최후변론에서 빛을 본다. 실제 이 사건 변론을 이렇게 시작했다.

“배심원 여러분들께서는, 배심원 선정절차에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

다고 모두 동의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에는 외국인도 포함된다고 답변해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중국인들이 많이 저지른다고 하여, 이 사건 피고인이 중국인이라고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을 것이라는 선입견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한국인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와 동일한 기준으로 이 사건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심원 몇 명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다. 자신감을 얻고 힘 있게 변론을 이어갔다.

외국인의 한국 형사절차 경험

누구든 수사를 받으면 힘들다. 체포되어 경찰서로 압송되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둘러싸여 힘악한 분위기에서 신문과정이 진행된다. 사회적 신분이 어떠하든지 신문과정에서는 그저 ‘피의자’일 뿐이다. 배려를 받는 자리가 아니다.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낄 수도 있다. 한마디 말할수도 조서에 담겨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 피의자가 된다는 건 정신적 무장해제를 당하는 것과 같다. 한국인이 국내에서 체포되는 경우도 그 정도인데, 외국인 입장에서 타국에서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경우는 더하다. 피고인 이우진 씨는 체포되어 조사받을 당시를 이렇게 기억했다.

“보이스피싱 안 했고, 몰랐으니까 몰랐다고 말하는 건데,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 사건 재판은 이틀간 진행됐다. 검사와 변호인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갔다. 법정에서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실은 집 안까지 들어왔었다고 새로운 주장을 하는 바람에 상황이 불리해지기도 했다. 둘째 날 오후 5시까지 이어진 재판과 평의 끝에 피고인은 결국 누명을 벗었다. 배심원 9인 만장일치 무죄였다.

무죄를 받게 된 결정적인 근거는 피고인의 친구가 보이스피싱 직원에게 보낸 메시지였다. 그 문자에는 ‘옆에 이우진도 있지만, 이번엔 나 먼저 할게’라는 내용이 있었다. 피고인 친구의 휴대폰 문자를 법정에서 제시하고, 그 친구는 이번 사건을 혼자 할 생각이 명백했다는 점을 배심원에게 설명했다. 피고인의 친구는 증인신문에서 ‘피고인과 상의하지 않았다. 수익이 나면 절반을 주려고 나 혼자 생각했다’라고 진술했다. 모든 공방이 법정에서 말로 이루어졌고 증거서류 하나하나 배심원 앞에 제시됐다. 배심원은 조심스럽게 경청하고 집중했다.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인 증거재판주의, 구두 변론주의가 실현되는 현장이었다.

최후진술에서 피고인이 입을 열었다.

“재판장님, 검사님, 증거 없는데, 제가 알지도 못했는데, 유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인생이 달려있어요.”

비장한 표정이었다. 긴장이 풀렸는지 참아왔던 눈물을 보였다. 더듬거리는 한국말, 미리 준비하지 않은 듯한 투박한 말투가 오히려 신뢰감을 주었다. 이우진 씨는 훗날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했다. “시민들이 재판에서 제 말을 잘 들어줘서 좋았어요.”

국민참여재판, 한 단계 도약을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우려를 안고 시작했다. 전문가의 판단영역을 과연 비전문가가 감당할 수 있을지 불안감이 있었다. 10년간 시행해 본 결과 그 우려는 기우였음이 확인되었다. 국민들은 사실관계는 물론 법리를 적용함에 합리적이고 섬세했다. 때로는 기존 법조인들과 시각이 일치하지 않기도 했다. ‘고의’나 ‘과실’과 같은 개념을 판단할 때 기존 판례와 다르게 인정하기도 했다. 배심원의 판단이 틀렸다고 단정할 순 없다. 상식에 기초한 배심원의 판단은 오히려 법조인들의 기존 시각이 사회통념에서 유리된 것은 아니었는지 반성할 기회를 제공했다.

프랑스의 정치학자 토크빌은 ‘배심재판은 민주주의의 무료학교다’라고 했다. 국민들은 배심원으로 참가하면서 사법절차를 배운다. 변호인과 검찰이 배심원에게 증거를 직접 제시하고 법적 개념과 판례를 설명한다. 국민들을 이해시키지 못하는 측은 재판에서 패배한다. 범조인만의 어려운 용어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건을 설명해야 한다. 국민들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민주주의도 체험한다. 자신들의 결정이 재판결과로 이어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사법 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기본 명제를 주권자 지위에서 목격한다.

외국인이 피고인이면 국민참여재판은 의미가 더욱 크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지위에 있다. 그들에 대한 현실적인 편견이 존재한다는 건 불편한 진실이다. 국민참여재판은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할 수 있다. 이번 이우진 씨 재판에서도 국민들은 피고인을 외국인이 아닌 ‘인간’으로 대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한 외국인은 우리 사법제도를 매우 높게 평가하게 된다. 우리는 외국과 비교하여 부족하지 않은 사법제도를 갖추었다고 자부할 만하다.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화를 진전시키고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왔다. 사법절차에 주권자가 참여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국민참여재판이 한 단계 도약하여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욱 높아지고, 민주주의가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이우진 씨의 한마디로 글을 마친다.

“주변 사람이 저처럼 어려운 일을 당하면 꼭 국민참여재판을 하라고 알려줄 거예요.”

사법 정의가 준 용기

2018년 국민참여재판 수기공모전 최우수상



어릴 적부터 내 꿈은 대학생이 되는 것이었다. 대학생만 되면 다 괜찮아질 거라는 어른들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다. 시골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팔다리가 뒤틀린 장애인으로 태어난 나는 원치 않는 관심과 괴롭힘을 넘치게 받아야 했다.

특하면 넘어뜨리고, 때리고, 도시락을 뒤엎는 아이들 틈에서 괴물 소리를 들으며 학창시절을 보냈다. 굶은 사지 때문에 걸을 때마다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는 나를 아이들은 집요하게 놀려댔다. 학교에 가기 싫다고 울면서 집에 올 때마다 어른들이 말씀하셨다.

대학만 가면 괜찮아질 거라고. 지금은 애들이 어려서 그런 거니 조금만 참으라고 말이다. 그

래서 그 말을 믿고 기다렸다. 마침내 수능을 치고 대학 입학할 하던 날, 나는 남들은 모르는 다른 이유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제는 사람 사이에 섞여 생활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러나 삶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어릴 때만큼의 노골적인 괴롭힘은 없었지만 나는 여전히 이방인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졌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친구 하나 없는 고독한 생활이 계속되었다. 그러다 새로 옮긴 부서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게 일부러 그러는 건지도 몰랐다. 뒤에서 나를 밀거나, 내가 들고 있는 물건을 친다거나 하는 일이 유독 잦았다. 넘어진 나를 보고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웃으며 가버리는 뒷모습을 보며 그게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망연자실했다.

대항할 힘도, 여유도 없었다. 곧 사람이 뜸한 곳에서 마주치면 폭언이 시작되었다. 나는 사지뿐만 아니라 얼굴 근육도 뒤틀려 있어 발음이 어눌하고, 양쪽 눈도 비대칭이라 정면으로 눈을 떠도 옆을 보는 것 같다. 그 사람은 내 그런 모습을 자주 비웃었다.

그래도 뭐라고 저항할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안 그래도 비웃음을 사는데 어눌하게 말을 해 봤자 놀림만 심해질 것 같았다. 내가 눈물을 참으며 무시하고 돌아서자, 점점 수위가 높아졌다. 그 꼴을 하고 밖에 나와 일을 하는 건 민폐 끼치는 일이라는 말을 들은 날은 조퇴했다. 안 그러면 사람이 보는 앞에서 엉엉 울 것 같아서였다. 계속 조퇴를 반복할 수 없어 관리자에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다. 그 사람은 관리자의 물음에 모르쇠로 일관했다.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일이라 관리자도 난색을 보였다.

괴롭힘은 날마다 정도가 심해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정말 없는가. 이 사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 ‘법’을 떠올렸다. 생각나는 게 그것밖에 없었다. 어떻게 하면 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밀치고, 넘어지게 만든 것으로 고소를 하면 될까? 아니면 폭언으로 고발을 하면 될까? 수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러다 갑자기 정말 재판을 하게 되면 판사님 앞에서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하는 내 모습이 떠올랐다. 정확하지 않은 발음으로 떠듬떠듬 말을 하는 내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큰 소리로 웃음을 터트릴 것 같았다. 법마저도 희망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자, 더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절망이 몰려왔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다고 삶을 포기할 수도 없었다.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살아야 했고, 직장도 다녀야 했다. 답답한 마음에 나는 법원으로 갔다. 실제 재판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만인에게 공정한 법임을 실감하다

법은 만인에게 공정하다는 그 말을 확인하고 싶었던 걸까. 눈으로 재판과정을 보고 나면 마음을 추스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저 재판과정을 보기만 하는 것도 가능한지, 문 앞에서 제재를 당하는 건 아닌지 고민을 하며 법원에 들어섰다. 재판은 특별히 비공개로 결정이 되지 않는 한, 누구나 방청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 텔레비전으로 보던 재판과는 달리 실제 법정에는 법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신기했다. 그날은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는 날이라 국민배심원단도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검사와 변호인은 증인의 말에 모순되는 점을 지적하고, 냉철하게 반대신문을 했다.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재판이라는 것이 단지 법전에 나오는 단어들로만 이루어

지는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해와 통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판사와 배심원은 오가는 공방을 주의 깊게 살폈다. 그들은 나의 우려와는 달리 증거에 입각한 사실을 살필 뿐 외적인 조건이나 사람의 차림은 보지 않았다. 그 과정을 통해 그간 내 모습이나, 어눌한 말 때문에 법마저 내게 등을 돌릴 거라는 걱정은 기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곳에선 법을 통해 정의가 실현되고 있었다.

국민 배심원은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조건이나, 모습에 상관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고 있었다. 나처럼 어제까지는 직장에 다니던 이들이 무작위로 선정되어 오늘 이 재판에 참여했다. 그들은 이성적으로 증거를 살펴보고,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을 판단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내게 힘을 주었다. 그동안 나를 가장 괴롭혔던 건 어쩌면 불의한 일이 아니라, 불의한 일을 겪는 나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었는데도 모르겠다. 그런데 재판과정을 통해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 나니 실제 없는 두려움을 이길 용기가 생겼다.

오후 2시 40분쯤, 휴정되고 잠깐이나마 쉬는 시간이 주어졌다. 나는 굳은 팔과 다리를 펴고 목도 이리저리 돌렸다. 그러던 중 오늘 재판과정의 일부분이 된 한 사람의 국민이면서 배심원인 이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의 진지한 모습을 보니 관심을 가지고 아는 만큼 신뢰하게 된다는 깨달음도 얻을 수 있었다. 어렵פות한 경험으로 세상의 모든 시스템을 불신하던 나는 늘 불안에 시달렸다. 그런데 막상 재판과정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나니 그런 불신이 사라졌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마음을 가다듬고, 내가 본 재판과정을 되새겨보았다. 공정하게 모든 자료를 살피던 이들이 떠올랐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나도 그러고 싶었다.

법에서 배운 공정함을 실천할 나를 준비하다

다음 날, 오전 일을 마무리할 때쯤 그 사람이 내가 들고 있는 서류를 손으로 내리쳤다. 평소 같으면 혹시나 다른 무슨 짓을 더 할까 봐 겁에 질린 채 허겁지겁 서류를 줍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었다. 그 사람에게 하려고 준비한 말을 하려고 하자 자꾸만 다리가 후들거렸다. 나는 발가락에 힘을 짝 준 채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런 물리적인 접촉과 강도 높은 수준의 폭언 역시 폭행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앞으로 더는 참지 않을 것이며, 지속하면 송사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 사람은 나를 쏘아보다가 해볼테면 해보라고 큰소리를 치며 나를 스쳐 갔다.

그 사람이 안 보일 때까지 발에 힘을 주고 있던 나는 곧 바닥에 주저앉았다. 쏟아진 서류를 주워드는데 눈물 대신 웃음이 터져 나왔다. 나는 작은 승리를 거둔 나 자신을 격려했다. 이후로도 그 사람의 괴롭힘은 계속되었지만 나 역시 계속 맞섰다. 그런 일이 반복되자 더는 목소리나 다리가 떨리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횡수가 현저히 줄어들더니 결국, 그 사람은 나와 마주쳐도 모른 척 갈 길을 가버렸다.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문제가 사라지자, 나는 쉬는 날이면 종종 법원을 찾게 되었다. 여러 분야의 사건을 재판하는 모습을 보며 아주 오랜만에 다시 꿈을 가지게 되었다.

내가 내 어려움을 해결했듯, 언젠가는 곤경에 빠진 다른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 아직은 그게 어떤 모습일지는 알 수 없다. 지금은 내게 힘을 주었던 재판과정에 자주 참여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식을 쌓는 정도가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그러나 언젠가는 나와 같이 불신의 벽에 갇혀 불의한 일을 당하고만 있는 이들에게 내가 목격한 법의 공정함을, 재판과정에서 정의를 찾고자 하는 이들에 대한 신뢰를 전해줄 수 있는 그 날이 올 것이라 기대한다.

국민 참여로 사법의 신뢰를 높이는 국민참여재판

2018년 국민참여재판 수기공모전 우수상



2013년, '너의 목소리가 들려'라는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다.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실시하는지 아무것도 모를 때 그 드라마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었다. 이후 나에게 그 제도는 바쁜 생활 속에서 차츰 잊혀갔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나는 준비하던 시험에 떨어져 방황하고 있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것이 나의 적성에 맞는 것인지도 알 수 없었던 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를 고민하는 와중에 우연히 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었다. 홈페이지 새 소식란에서 국민참여재판 참관을 안내하는 공지를 보았다. 그때는 막연히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다는 순수한 호기심에 적당한 날짜에 맞춰 참관하기로 마음먹었다.

‘법원과 검찰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인생에 이롭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는 것처럼 나는 법 자체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고 집행되는지는 잘 알지 못했다. 스스로 알려고 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겠지만, 일반적으로 법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검경의 조사가, 그리고 법원의 재판은 멀게만 느껴질 것이다. 내 나이대 사람에게서는 송사에 휘말리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은 일일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내가 재판을 보러 법원에 간다고 했을 때 친구 중 한 명은 재판을 일반인(제3자)도 볼 수 있느냐고 물어보기도 했다. 그만큼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송사에 휘말린 사람이 평범하지 않게 살아간다는 의미는 아니다)에게 재판은 마치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기자와 재판부, 피고인 및 검사, 해당 재판과 관련된 방청객들이 있는 법정에서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 법 집행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인식 때문에 나도 처음 재판을 보러 가려고 했을 때 제3자인 내가 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을 방청해도 되는지 의문이 들어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에는 배심원이라는 특별한 역할이 있었으므로 내가 방청객이 아닌 배심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배심원은 국민 개개인의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것이며 만약 배심원으로 선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나는 한 번도 배심원으로 선정된 적이 없어서 방청객으로만 세 번을 참관했다. 그렇게 국민참여재판을 참관하기 위해 정보를 모으고 법원이라는 엄숙한 공간에 대해 예의를 지키기 위해 웃은 어떤 것을 입어야 좋을지 사소한

것들까지 고민하던 나날이 지났다. 2017년 8월 어느 날 나는 난생처음으로 법원에 들어가 재판을 방청했다.

때는 여름이어서 저녁 7시가 지나도 밝은 하늘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날 재판은 상당히 긴 재판이었는데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기 때문이었다. 양형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이 아니라 사건의 인과관계에 중심을 둔 재판이었고 검사 측과 피고인 측이 몇 시간 동안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보다 길어지는 재판에 재판부도, 검사와 피고인 측도, 배심원도 서서히 지쳐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런데도 재판을 여는 행위는 어떤 한 인간이 앞으로 살아갈 삶을 결정하는 것, 더불어 그 재판에 회부된 죄목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이었으므로 그 누구도 건성으로 재판을 이어가지 않았다. 처음 본 재판이었지만 재판의 진행 과정을 재판장님이 친절하게 설명해주셨고, 그 덕에 국민참여재판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이렇게 국민이 직접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의의가 있는지 피부로 직접 느낄 기회였다. 오후 여섯 시가 넘어서야 평의 과정에 들어갔고, 시간이 너무 늦은 관계로 나는 그 재판의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보지 못하고 귀가해야 했다. 하지만 그 늦은 시간까지, 보통의 직장인들이라면 모두 퇴근했을 오후 여섯 시가 넘은 시각까지 열성을 다해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새삼 그들에게 감사함을 느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다

그날의 참관은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나를 포함한 내 주변의 사람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형사사건에 관여된 적이 없었으니 형사재판을 눈으로 직접 봄으로써 더욱더 인상에 깊게 남은 것 같다. 피고인이든 피해자든 어떤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나아가 그 억울한 당사자 가족들의 설움까지 보듬어주는 것, 법치국가에서 법률에 반하는 행동을 한 자

에게 원칙적으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자유에 대한 억압을 현행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가하는 것. 우리는 보통 기사로 접하는 재판결과들을 보며 형량이 너무 낮다고 분개한다. 물론 형량이 너무 낮은 경우도 많다. 그러나 그 이면의 숨은 것을 볼 수 있는 눈, 피고인이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아내는 눈이 사실은 법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걸 알았다.

재판 자체는 표면적인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개정될 수 있다. 그러나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과정은 사건의 표면을 떠나 진정으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당사자들의 감정을 보듬어주는 일종의 위로인 것이다. 일반적인 형사재판일 경우 그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으로 한정되어 있겠지만,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이 있다는 점에서 일반 형사재판과 크게 다르다.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더 있다는 것이 재판의 결과를 떠나 얼마나 나에게 위로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국민참여재판 자체는 사실 피고인에게 더 이득이 되는 재판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조금 슬펐다.

복잡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서 나는 다음에 있을 국민참여재판을 가야 하나 고민했다. 딱 한 번 방청한 재판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기 어려우므로 적어도 두 번은 봐야 사실관계를 파악한다는 게 무엇인지, 형량을 결정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 텐데, 누군가의 여생을 결정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사실은 조금 힘들었기 때문이다. 법관에게는 이미 그것이 직업이 되어 충분한 경험을 통해 당사자들에 대한 본인의 감정을 충분히 제거하고 재판에 임할 수 있을 테지만, 나는 처음으로 본 재판이었고 생각보다 법을 집행하는 것에 슬픈 기분이 들었다. 그러던 중, ‘살인’이라는 죄목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열린다는 공지를

보았고,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었을까’하는 분노의 마음에 같은 달, 다시 한 번 재판을 방청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날 재판은 내 예상과는 너무도 다른 재판이었다. 인간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을 한 이유(동기)를 타인이 왜 알아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재판이었다.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여, 사랑하는 아내의 병세에 절망하여 모든 것을 끝내고 무(無)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 그런 마음이 그 법정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있었던 것이다.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분명 나쁜 것이다. 우리는 인간이므로, 사유할 수 있는 존재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당위적인 말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내는 말이 되었던 건 아니었을까. 죄목 자체는 너무나 무섭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었지만, 아무리 비관적 생각으로 가득 차 이성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상태였어도 행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지만, 그렇다고 그 피고인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다.

당신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위로의 시간

그래서 또다시 나는 국민참여재판이 있어야 하는 이유를 깨달았다.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본 사건에 관해서는 감형이 됐을 것 같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떠난 사람에게 드는 죄책감, 남겨진 사람에 대한 미안한 마음들이 공기를 떠다니며 법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스며들었다. 행동의 결과는 너무도 큰 비극이었으나 그 행동의 이유를 안타깝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신을 비롯한 주변 사람까지 상처를 입히는 그 행동을 처음부터 막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그 법정 안에 있었다. 떠나간 사람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 그렇게 만든 사람도 확실히 있으므로, 아무리 동정심이 생겨도 무죄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사람은 벌

을 받아야 하고 생을 떠난 사람에게는 위로의 손을 건네야 한다. 하지만 이 비극을 처음부터 막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게 여러 사회적 장치가 그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에 나는 재판 내내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돌아가신 분에게도, 그런 행동을 했던 피고인에게도.

법을 집행하는 행위에는 감정이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실을 파악하여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마땅한 벌을 주고 그 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법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는 당연한 법치국가의 논리를 통해 사회적인 안정감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안다. 인간이 사실은 생각할 수 있는 동물에 불과하고 벼랑 끝에 몰리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야 말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인간의 존엄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우리는 이처럼 인간의 존엄을 스스로 저버린 때마저도 그 행동을 한 사람의 말을 들어주어야 한다. 그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알아야 다음에 있을지도 모르는 또 다른 슬픔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행위에는 어쩔 수 없이 인간 자체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 스민다. 어차피 완전한 이해는 불가능한 것이고 우리는 조금 더 이해하고 싶어서 노력에 노력을 거듭할 뿐이다. 그러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다양한 사람이 모여 사는 이 사회는 너무나도 각박해질 것이고, 각박함이 지속되면 비극은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것이므로.

법조인이 아닌, 법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닌 자신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다는 것.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을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 그 과정을 통해 많은 사람이 미처 보지 못한 사회의 일면을 마주할 수 있고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될 비극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을 집행하는 행위에는 감정이 섞여서는 안 되지만 법을 집행하는 행위의 원인이 된 행위를 살펴보는 데에는 감정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제도의 존재 이유는 바로 대다수의 일반 국민이 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사회의 어두운 면을 마주 보고 함께 밝은 면으로 바꾸기 위함이 아닐까.

나는 더 많은 사람이 재판을 직접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의 여생을 결정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왜 그들이 스스로와 타인의 존엄을 해치려고 했는지 들여다볼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다. 다양한 사람이 참여하며 자신들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재판을 이해하고 왜 그 재판이 열렸어야 했는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질수록, 이 사회의 많은 비극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바라며 보내는 제언

2018년 국민참여재판 수기공모전 우수상



저는 2010년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그해 3월부터 국선전담변호사로 9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만 십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국민참여재판은 물론이고 일반 형사재판 실무 경험조차 전혀 없었던 변호사 첫해부터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국선전담변호사가 아니었다면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재판이기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참여재판 초창기부터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하며 경력을 쌓아왔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수기 공모전에 응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총 18건의 형사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필요적 국선변호 사건이어서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여 국선전담변호사인 제가 선정된 경우가 많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통상재판보다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들에게 권유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상해치사 사건을 첫 사건으로 하여, 강도 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준유사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흥기 등 상해), 특수상해, 준강간, 강간미수, 도로교통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 다양한 사건들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으로서 보람과 자부심이 큰 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은 먼저 변호인에게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재판입니다. 변호인으로서 일반 재판에 비해 대형 화면을 이용하기 위한 자료 등 준비할 것도 많고, 정해진 시간 내에 끝내야 한다는 시간의 압박 속에서 재판부에는 요점만 간단히 말해도 되는 내용을 배심원에게는 용어부터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언제나 이를 뛰어넘는 보람이라는 보상이 있었습니다. 일반 재판은 보통 10~15분 간격으로 사건이 지정되기 때문에 시간 내 충분한 구두변론을 하기 어려워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있는데,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영화에서나 볼 법한 공판중심주의, 구두변론주의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에서도 '배심원 만장일치 피고인은 무죄'라는 선고를 들을 때면 말로 표현하지 못할 짜릿함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진행한 사건 대부분이 피고인이 원하

는 결과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피고인들은 충분한 변호를 받았다는 생각에 만족해하였습니다. 또한 자신들 같은 일반 국민에게 재판권을 받았기에 판결에 대한 수용력이 더 높은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였던 피고인으로부터 '(국선)변호사에 대한 불신이 있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변호사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인식이 달라졌다'는 말을 듣고, 오히려 제가 더 감동을 하여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매달 수십 건의 비슷한 사건들을 처리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지만, 가끔 하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내가 어렸을 적 꿈꾸던 변호사답다는 생각이 들어 개인적으로는 변호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자부심을 갖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엄격한 배심원으로 인해 공정한 재판 가능성 높여

이러한 변호인으로서 가지는 의미 외에도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재판입니다. 법률가로서 사건 처리 경험이 많다는 점이 어떤 때는 선입견을 가지고 사건을 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하겠지만 이러한 선입견으로 인해 서인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까지는 기대하지 못했던 사안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가 선고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배심원이 철저히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엄격하게 증거를 살펴본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진술증거 또는 정황증거만 있는 사안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였던 2014년 준강간, 2017년 강간미수, 2018년 강간미수 국민참여재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되고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를 선고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성범죄 사안에서 배심원 만장일치의 무죄가 선고된 것은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철저히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증거에 대해 엄격한 판단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백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의 어쩔 수 없었던 범행 동기, 어려운 가정형편 등 정상에 관해 배심원이 충분히 공감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통상재판으로 진행하였더라면 피고인에게 기존 전과가 많아 상습성을 배제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생계 곤란으로 건장했던 피고인이 엉덩이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르게 되었다는 여동생의 진술 등을 통해 절도 습벽의 발로가 아닌 생계형 범죄였음을 인정받아 상습성이 배제되어 단순 절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투표지를 찢은 공직선거법 위반 자백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경찰 단계에서부터 잘못된 인정하나 자신이 받은 투표지를 찢은 것이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법률에 대해 일반인보다는 잘 알고 있는 법률가이다 보니 정말 모를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막상 배심원 선정절차에서 배심원후보자들에게 물어보니 8명 중 단 2명만이 투표용지를 찢으면 형사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죄가 되는 줄 몰랐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배심원이 충분히 공감하여 주었고, 그 결과 배심원 만장일치로 법률상 최저형인 벌금 2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재판을 통해 2018년 1월 7일부터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도입되었음을 알릴 수가 있었습니다.

국민이 사법절차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신뢰 높일 수 있어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 배심원에게도 의미가 있는 재판입니다. 일반 국민에게 사법절차를 직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실제 발견의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고 적법절차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신중하고 충분한 심리 과정을 통해 사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형량이 약하다는 등 판사가 어떻

다는 등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으나 국민참여재판에 직접 참여해 본다면 왜 그러한 판결들이 선고되는지를 직접 경험하여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라는 제도적 취지 외에 부수적으로 계도의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에게 법을 배울 기회가 됩니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합의부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단독 사건의 경우 오히려 일상에서 누구에게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배심원으로서 판단과 생활법률로서 배우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 적절하고 유익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구약식 벌금 사안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경우 비용적인 면을 이야기하며 이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물론 비용만을 생각하면 비효율적이지만 일반 국민에게 더욱 밀접한 사안은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공직선거법위반과 같은 벌금 사건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참여재판제도 초창기부터 국민참여재판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이 노력해 왔는데 저 역시 작지만 보탬이 되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큰 장점을 지닌 국민참여재판이 앞으로 더욱 보편화,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국민참여재판 진행과정

- 국민참여재판은 원칙적으로 매일 재판을 진행하며, 1~3일 안에 재판을 마치도록 운영합니다.

